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4
----------	---------

제안년월일 : 2016년 9월 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근로자이사제 대상기관을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정하고, 근로자이사제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근로자이사제 시행 대상기관을 근로자 정원 30명 이상인 공사 등에서 1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 나. 근로자이사 재직자격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함(안 제6조).
- 다. 근로자이사의 수당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
- 라. 일부 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 정수 확대 부분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30명”을 “100명”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 중 “5년”을 “1년”으로 하고, 제1항의 단서 이하를 삭제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안전검토, 이사회 참석 등”을 “안전 및 자료검토 등”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u>30명</u>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u>30명</u>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p>	<p>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u>100명</u>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u>100명</u>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p>
<p>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u>5년</u>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재직기간이 근로자이사의 임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u>5년</u>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u>1년</u>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단서삭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u>1년</u>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3조(수당 등) ① (생략)</p> <p>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u>안전검토 이사회 참석</u>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당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u>안전 및 자료검토</u>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원안과 같음)</p>
부 칙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중 “15명”을 “17명”로 한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p>

②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명"을 "16명"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0명"을 "11명"로 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지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근로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